

현행	개정안
<p>(신설)</p> <p>제 22 조(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요율)</p> <p>① 영 제92조의 규정에 의한 연간 대부료 또는 사용료율은 당해 재산 평정가격의 1000분의 50으로 한다.</p> <p>다만, 공용 또는 공공용의 목적과 새마을사업에 사용되는 재산에 대하여는 당해 재산평정가격의 1000분의 25, 주한외국공관용으로 사용되는 재산에 대하여는 당해 재산평가정가격의 1000분의 40으로 한다.</p> <p>② 영 제92조제3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경작목적으로 사용되는 토지의 연간 대부료는 지방세법 제197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농지소득금액의 1000분의 150과 지방세법 시행령 제8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시가 표준액의 1000분의 25중 소액의 것으로 한다.</p> <p>③-⑦ (생략)</p> <p>제 27 조(대부료 등에 대한 연체요율) 대부료 사용료 또는 매각대금 납부기간내에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연체요율에 관하여는 마포구 일반회계 금고업무를 취급하기 위하여 금고로 지정된 금융기관의 일반연체이자율을 준용한다.</p>	<p>5. 도시재개발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주택개량 재개발구역안에 있는 토지중 시·도지사 재개발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유건물에 의하여 점유·사용되고 있는 토지를 재개발사업 시행인가 당시의 건물소유자에게 매각하는 경우</p> <p>제 22 조(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요율)</p> <p>① ..... ..... ..... <u>취락개선사업</u> .. ..... ..... .....</p> <p>② ..... ..... ..... ..... ..... <u>농지소득금액의 1000분의 50 또는 토지과세시가 표준액의 1000분의 8중 저렴한 금액으로 한다.</u></p> <p>③-⑦ (현행과 같음)</p> <p>제 27 조(대부료 등에 대한 연체요율) 대부료 및 사용료, 매각대금, 변상금을 납부기간내에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연체요율은 연15퍼센트로 한다.</p>

서울특별시마포구수수료징수조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1994. 9. 13.  
총무재무위원회

1. 심사결과

-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 1994. 8. 30. 마포구청장 제출
- 나. 회부일자 : 1994. 9. 6.
- 다. 상정일자 : 제24회 임시회 제3차 위원회(94. 9. 13)상정, 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제안설명자 : 세무1과장 문엽승)

가. 제출이유

- 국민의 알 권리 충족과 행정의 신뢰성을 두텁게 하기 위하여 행정기관이 보유, 관리하고 있는 행정정보를 일반국민에게 공개하도록 한 행정정보 공개운영지침이 국무총리 훈령(제288호)으로 시행됨에 따라 정보공개에 따른 수수료를 징수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
- 의료법이 개정(1994. 1. 7. 법률 제4732호)되면서 동법 시행규칙 제7조3항에 규정되어 있던 의료기관 개설허가 등의 수수료 조항이 삭제됨에 따라 이를 우리구 수수료징수조례로 정하여 수수료징수에 차질이 없도록 하기 위함

나. 주요골자

- 행정정보 공개수수료 징수기준 신설(안, 제3조 관련 별표)
- 의료기관 개설허가 등의 수수료 징수기준 신설(안, 제3조 관련 별표)

3.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의 요지(전문위원 김건재)

- 동 조례안중 별표1, 제증명 확인 발급사항(41종), 바. 주소 신상 및 직무에 관한 증명중 (2) 신원증명의 발급은 93. 12. 21. 신원조회업무지침(내무부 예규 제756호)에 따라 94. 1. 1.부터 폐지되었으며,
- 나. 재산 및 지방세에 관한 증명 중 (4) 건축물 관리대장등본의 발급은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1992. 6. 1. 건설부령 제507호)에 따라 삭제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됨.
- (7) 외국인등록표(재교부)신청은 외국인 등록표교부업무가 출입국 관리사무소에서 발급하는 외국인 등록사실증명으로 변경되어 사문화된 규정으로 삭제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질문(김유현 위원장) : 행정공개의 범위는 어디까지인가?
- 답변(김석봉 시민봉사실장) : 행정공개목록 운영지침에 의하면 677종으로 구체적인 것은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 질문(유남렬 위원) : 전문위원의 검토의견 중 행정정보공개에 관한 사항중 (2) 문서의 복사에서 21매 이상 소요될 때 복사지를 신청인이 부담하는 경우 2매당 100원은 문제가 있지 않은가?
- 답변(김석봉 시민봉사실장) : 총리령의 기준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했다고 사료됩니다. 그러나 우리 개정안에는 1매당 100원으로 했습니다.
- 질문(황태식 위원) : 행정관서에 복사지를 지참하여 신청하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닌가?
- 답변(김석봉 시민봉사실장) : 그래서 개정안에는 넣지 않았습니다. 대부분 20매 이내가 많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5. 토론요지 : 수정안 가결할 것을 동의

6. 수정안요지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 1994. 9. 13. 유남렬 위원외 1인

나. 수정이유

- 마포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마포구수수료징수조례증개정조례(안)중 건설부령 및 내무부지침 등에 의거 삭제해야 할 부분이 삭제가 안되는 등 미흡한 부분이 있어 보완하려는 것임.

다. 수정주요골자

○ 별표1. 제증명 확인 발급사항의

나. 재산 및 지방세에 관한 증명란 중 “(4) 건축물 관리대장 등본”란을 삭제

바. 주소, 신상 및 직무에 관한 증명란중 “(2) 신원증명란 및 (7) 외국인 등록표(재교부)신청”란을 삭제

7. 심사결과 : 수정안가결

8. 소수의견의 요지 : 없음

9. 기타사항 : 없음

서울특별시마포구수수료징수조례증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328
----------	-----

제출년월일 : 1994년 8월 30일

제출자 : 마포구청장

1. 개정이유

- 국민의 알권리충족과 행정의 신뢰성을 두텁게 하기 위하여 행정기관이 보유, 관리하고 있는 행정정보를 일반국민에게 공개하도록 한 행정정보 공개운영 지침이 국무총리 훈령(제288호)으로 시행됨에 따라 정보공개에 따른 수수료를 징수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
- 의료법이 개정(1994. 1. 7. 법률 제4732호)되면서 동법 시행규칙 제7조제3항에 규정되어 있던 의료기관 개설허가 등의 수수료조항이 삭제됨에 따라 이를 우리구 수수료징수조례로 정하여 수수료징수에 차질이 없도록 하기 위함.

2. 주요골자

- 행정정보공개 수수료 징수기준 신설(안, 제3조 관련 별표)
- 의료기관 개설허가 등의 수수료징수기준 신설(안, 제3조 관련 별표)

3. 개정근거

- 지방자치법(1994. 3. 16. 법률 제4741호) 제128조, 제130조
- 의료법(1994. 1. 7. 법률 제4732호) 제30조제3항, 제4항
- 행정정보 공개운영지침(1994. 3. 2. 국무총리훈령 제288호)

4. 개정조례(안) : 별첨

5. 예산조치 필요성 여부 : 불필요

서울특별시마포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마포구수수료징수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수수료의 종류 및 징수금액 중 “1. 재증명확인 발급사항(38종)”을 “1. 재증명확인 발급사항(41종)”으로 하고, 동호중 카. 공부열람란 다음에 다. 행정정보공개에 관한 사항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종 목	단 위	수수료액	비 고
다. 행정정보공개에 관한 사항			
(1) 문서 또는 필름열람	1건(1회)당	100원	
(2) 문서의 복사	1매당	100원	
(3) 컴퓨터 입력자료의 인쇄	1매당	100원	

(별표) 수수료의 종류 및 징수금액 중 “2. 각종 인·허가 및 신고사항(20종)”을 “2. 각종 인·허가 및 신고사항(29종)”으로 하고 동호, 가. 인·허가에 관한 사항 중 (9) 토지 형질변경(택지조성) 행위허가 신청란 다음에 (10)내지 (12)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종 목	단 위	수수료액	비 고
(10) 의료기관 개설허가(종합병원)	1건	50,000원	
(11) 의료기관개설허가(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요양병원)	1건	30,000원	
(12) 의료기관 허가사항 변경(장소이전, 구조 등)	1건	10,000원	

(별표) 수수료의 종류 및 징수금액의 2. 각종 인·허가 및 신고사항란 나. 신고·신청에 관한 사항중 (11) 사회단체 변경등록 신청란 다음에 (12) 내지 (17)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종 목	단 위	수수료액	비 고
(12) 의료기관 개설신고(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조산소)	1건	20,000원	
(13) 의료기관 신고사항 변경(장소이전, 구조 등)	1건	10,000원	
(14) 치과기공소 인정신청	1건	2,000원	
(15) 치과기공소 신고사항 변경	1건	1,000원	
(16) 안경업소개설 등록신청	1건	10,000원	
(17) 안경업소개설 등록변경	1건	5,000원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행				개정안			
(별표) 수수료의 종류 및 징수금액 1. 제증명확인 발급사항(38종)				(별표) (현행과 같음) 1. (현행과 같음) (41종)			
종 목	단위	수수료액	비고	종 목	단위	수수료액	비고
가~카, (생략)				가~카, (현행과 같음)			
타. (신설)				타. 행정정보 공개에 관한 사항			
(1) (신설)				(1) 문서 또는 필름열람	1건(1회)당	100원	
(2) (신설)				(2) 문서의 복사	1매당	100원	
(3) (신설)				(3) 컴퓨터 입력 자료의 인쇄	1매당	100원	
2. 각종 인·허가 및 신고사항(20종)				2. (현행과 같음) (29종)			
종 목	단위	수수료액	비고	종 목	단위	수수료액	비고
가. 인·허가에 관한 사항 (1)~(9), (생략)				가. (현행과 같음)			
(10) (신설)				(1)~(9), (현행과 같음)			
(11) (신설)				(10) 의료기관 개설허가(종합병원)	1건	50,000원	
(12) (신설)				(11) 의료기관 개설허가(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요양병원)	1건	30,000원	
나. 신고·신청에 관한 사항 (1)~(11), (생략)				(12) 의료기관 허가사항변경(장소이전, 구조 등)	1건	10,000원	
(12) (신설)				나. (현행과 같음)			
				(1)~(11), (현행과 같음)			
				(12) 의료기관 개설신고(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조산소)	1건	20,000원	

현행				개정안			
종목	단위	수수료액	비고	종목	단위	수수료액	비고
(13) (신설)				(13) 의료기관 신고사항변경(주소이전, 구조 등)	1건	10,000원	
(14) (신설)				(14) 치과기공소 인정신청	1건	2,000원	
(15) (신설)				(15) 치과기공소 신고사항 변경	1건	1,000원	
(16) (신설)				(16) 안경업소 개설등록신청	1건	10,000원	
(17) (신설)				(17) 안경업소 개설등록변경	1건	5,000원	

서울특별시마포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한수정(안)

제안년월일 : '94. 9. 13.

제안자 : 총무재무위원장

1. 수정이유

마포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마포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중 건설부령 및 내무부지침등에 의거 삭제해야할 부분이 삭제가 안되는 등 미흡한 부분이 있어 보완하려는 것임.

2. 수정주요골자

○ 별표 1. 제증명확인 발급사항의

나. 재산 및 지방세에 관한 증명란중 “(4) 건축물 관리대장등본”란을 삭제

바. 주소, 신상 및 직무에 관한 증명란중 “(2) 신원증명란 및 (7) 외국인등록표(재교부) 신청”란을 삭제

서울특별시마포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한수정(안)

서울특별시마포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중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별표중 “1. 제증명확인 발급사항(41종)”을 “1. 제증명확인 발급사항(38종)”으로 하며, 나. 재산 및 지방세에 관한 증명란중 “(4) 건축물관리대장등본”란을 삭제하고 “(5) 내지 (6)”을 “(4) 내지 (5)”로 하며, 바. 주소, 신상 및 직무에 관한 증명란 중 “(2) 신원증명”란을 삭제하고 “(3) 내지 (6)”을 “(2) 내지 (5)”로 하며, “(7) 외국인등록표(재교부)신청”란을 삭제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